

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2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12월 3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라 ‘서울특별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’에서 결정한 ‘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 의정비 지급기준’에 맞춰 ‘월정수당 지급기준표’를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‘월정수당 지급기준표’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“3,864,590원”에서 “3,899,370원”으로 변경함([별표 2]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, 제34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

구 분	지 급 액
월정수당	3,899,370원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 2] 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		[별표 2] 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	
구 분	지 급 액	구 분	지 급 액
월정수당	3,864,590원	월정수당	3,899,370원



○ 월정수당 ≙ 229,500천원

- 5년간 월정수당 =  $\sum_{i=1}^5 (\text{연간비용})_i$

$i$ 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 ~ 2024년)

- 연간비용 ≙ 34,780원(월정수당 인상분) × 110명(서울시의원 수) × 12월 = 45,910천원

<월정수당지급기근표 변경 내용>

구 분	지 급 액		
	개정 전	개정 후	증감
월정수당	3,864,590원	3,899,370원	34,780원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주무관 김민호

☎ 02-2180-7932

e-mail : waterkim@seoul.go.kr